

2025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아래와 같이『2025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지원대상

대상자격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신청일 기준 7년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대상주택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제외대상

- 신청일 이후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금융권 대출과목(용도)이 '신용·일반 자금대출 용도'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른 유주택자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및 「무주택 들께자녀 출산기구 주거임차비 지원」 대상자
- 기타 본 지원사업 공고상 대상 자격 및 신청서류가 부적합한 자

2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40만원)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이자의 2%(최대 180만원)
 - 지원대상(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는 해당되어야 함
 - * 장애인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 다문화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3 신청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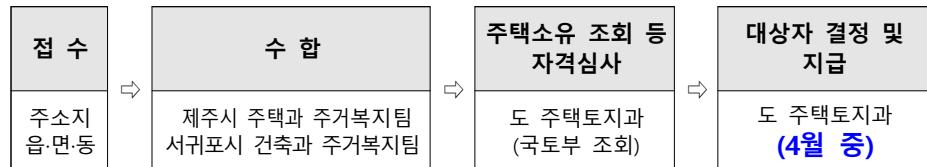
신청방법

-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기간: 2025. 1. 20.(월) ~ 2. 28.(금)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①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 09:00 ~ 18:00 근무시간 내
② 제주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접수시작일 09:00~마감일 18:00
 - * 아래 첨부 신청방법 참고

지급방법 : 연 1회 현금 지급(신청인 명의 계좌)

※ 심사 후 4월 중 지급 예정

처리절차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064-710-4254)
-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2) /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
-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4

신청서류

신청서류 목록

- ① (서식1) 지원 신청서 1부
- ② (서식2) 서약서 및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동의서 1부
- ③ (서식3) 설문지 1부
-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 임대차계약 기간은 신청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단, 임대인·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계약 갱신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않고 기존 임대조건으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인정(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 근거)

* 필요 시 임대인과의 유선통화 또는 상호 간 연장 합의(기재·날인) 등 묵시적 갱신 요건을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일 이후 계약기간 시작 임대차 서류(갱신계약서 등) 제출인 경우 **이전 계약서류도 추가 첨부 필요**
(신청일 현재 거주 여부 확인 필요)

⑤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 금융거래확인서 등은 신청일 당시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발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금융 기관 직인날인**이 되어야 함(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분)

* 대출과목(용도) 상 '주택' '임차' '전세' 등이 명시되어 주택 전세 자금 대출목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⑥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발급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로 발급

⑧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인 경우)

⑨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구로 신청 시)

⑩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 가구로 신청 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가능

⑪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⑫ 신청인 신분증

유의사항

- 1가구 당 연 1회 신청(부부간의 주민등록표등본 주소가 다르고 각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더라도 1회만 신청 가능)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이어야 하며, 필요 시 담당자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5

대상자 선정

무주택 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른 **무주택자**
- 전국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소유(공유지분, *분양권, 상속취득 포함) 현황을 조회하여, **공고일부터 지원대상자 결정 시까지 무주택 가구여야 함**
 - * 분양권일 경우 잔금지급 시 유주택자
 - 향후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금 반납 조치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현황 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통보될 경우, **3일내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서류 검토 및 무주택 확인 등 자격심사 후, **예산범위 내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우선순위 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2순위(자녀출산 가구) : 1자녀 가정(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3순위(신혼부부 가구) : 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 **3회 연속 신청 가구는 가장 후순위로 함**(순위가 같을 경우 위 순위에 따름)

선정결과 공고

- **2025년 4월** 중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 및 문자알림

6

기타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향후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지원을 받았더라도 금번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재신청 가능합니다.
- **'25년 예산 소진으로 이번 공고에 의한 지원으로 금년도 사업 종료 될 수 있습니다.**

복권기금과 함께하는 출출한 주거복지

< 서식 1 >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구분 (✓ 체크)	1순위	<input type="checkbox"/>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구성 가구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가구
	2순위	<input type="checkbox"/> 자녀출산(1자녀) 가구	3순위	<input type="checkbox"/> 신혼부부 가구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신청구분 내용기재	혼인신고일		주택소유여부 (✓ 체크)	<input type="checkbox"/> 무주택
	출생연월일		출산자녀성명	
임차주택 현황	소재지		건물용도	
	임차금액	원	임차면적(m ²)	
대출현황	대출기관	대출잔액(원)	원	
지급계좌 (신청인명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신청금액 *대출잔액 1.5% *1순위대상 2%	천원 (*천원미만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읍·면·동장 (직인)		
구비서류	1. (서식2)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서식3) 설문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 서류 1부 4.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 서류 1부 5. 주민등록표등본 1부 6. (신혼부부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1부 7. (등본상 자녀/배우자가 따로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해당 시)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9. (해당 시) 장애인 증명서 1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10.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11. 신분증			

< 서식 2 >

복권기금과 함께하는 출출한 주거복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에 있어 아래 신청자격에 해당함을 확인·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혼인기간 및 무주택 등 확인		해당 시 본인 자필서명
혼인기간 또는 자녀출산일	본인 및 배우자는 2018년 이후(혼인신고일 기준) 결혼한 신혼부부 가구임을 확인함	
	본인 및 배우자는 2018년 이후(출생연월일 기준) 자녀를 출산한 가구임을 확인함	
무주택 확인	본인 및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주택전세 자금대출	본인 또는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대상주택 전세 여부	본인 또는 배우자는 지원 대상주택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 고 있음을 확인함	
반납	중복지원 제한 사업 등, 결격사유가 있을 시 지원금을 자금 받았더라도 반납함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과 배우자는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배우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위의 신청자격 및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에 서약·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동의자)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복권기금과 함께하는 촘촘한 주거복지

< 서식 3 >

신혼부부·자녀출산 기구 주택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설문지

본 조사는 2025년도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정책 효과 및 개선점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의견조사입니다. 응답 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오니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세 ※ 본 지원사업 신청인 기준

2. 귀하께서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단독 · 다가구 ② 다세대 · 연립주택 ③ 아파트 ④ 기타(오피스텔 등)

3. 귀하의 월 소득액은 얼마입니까? ()
① 100만원 이하 ② 200만원 이하 ③ 300만원 이하 ④ 400만원 이하 ⑤ 기타

4. 귀하의 가족유형은 무엇입니까? ※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체크 해주세요.
① 신혼부부 가구 ② 자녀출산 가구 ③ 2자녀 이상 가구 ④ 기타()

5. 귀하께서 받은 주택의 전세대출금은 얼마입니까? ()만원

6. 귀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6-1. 불만족하신 경우, 불만족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

7. 귀하는 어떻게 사업을 알게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까?
① 지인 ② SNS ③ 공고 ④ TV·신문 ⑤ 전광판·버스정보시스템 ⑥ 기타()

8. 본 사업과 관련하여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십시오.

참고

온라인 신청 방법

1. 도청 홈페이지 접속 (<https://www.jeju.go.kr>) – 로그인
 2. 메인화면 하단 <어떤정보가 필요하신가요?>의 [도시계획/토지/주거] 선택
– 상세메뉴 중 [주거복지] 선택 – 안내 메뉴 중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전세이자 지원’ 선택 – 하단 “**신청하기**” 클릭

-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그림 1] 도청 홈페이지 접속 → <어떤정보가 필요하신가요?>의 [주거복지]선택



[그림 2] 주거복지 안내 메뉴 중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전세이자 지원의 ‘신청하기’ 선택

3. 지원 신청서 작성

신청하기

! 표시는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기본 정보 (필수 입력)

신청 순위 :	선택하세요	신청인 성명 :	○ []
신청인 생년월일 :	19[]-[]-[]	연락처 :	010-[]-[]
혼인신고일	[]	읍면동 :	선택하세요
도로명주소	주소검색		
상세주소			

자녀 정보

자녀 출생년월일	[]	출산자녀 성명	[]
----------	-----	---------	-----

주거정보

주택 소유여부	<input type="radio"/> 소유 <input checked="" type="radio"/> 미소유	건물용도 :	선택하세요
임차금액 :	0 원	임차면적 :	0 m ²

[그림 3] 기본정보, 자녀정보, 주거정보 등 작성[임시저장 가능]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자녀출산가구는 자녀출산일 필수(7년이내)

대출정보

대출기관 :	대출잔액 :	0 원
--------	--------	-----

지급계좌정보

지급계좌 금융기관 :	선택하세요	계좌번호 :	[]
예금주 :	[]	신청금액 :	0 원

신청자격 확인(공고일 및 7년이내 기준 : 차수별 공고문에서 확인)

본인 및 배우자는 공고일 기준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결혼한 신혼부부 가구임을 확인함	<input type="checkbox"/> 확인함
본인 및 배우자는 공고일 기준 7년 이내*(출생년월일 기준) 자녀를 출산한 가구임을 확인함	<input type="checkbox"/> 확인함
본인 및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확인함
본인 또는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input type="checkbox"/> 확인함
본인 또는 배우자는 지원 대상주택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input type="checkbox"/> 확인함
중복지원 제한 사업 등, 결격사유가 있을 시 지원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반납함	<input type="checkbox"/> 확인함

[그림 4] - 대출정보, 계좌정보 등 작성[임시저장 가능]

* 신청금액은 신청순위, 대출잔액, 한도액에 따라 자동계산 됨
- 신청자격 확인 체크

[공통] 필수 첨부서류

첨부 1. 설문지 :

[]	찾아보기...
-----	---------

첨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

[]	찾아보기...
-----	---------

- * 임대차계약 기간은 신청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단, 임대인·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계약 갱신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않고 기존 임대조건으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복시적 간접으로 보아 인정(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 근거)
- * 필요 시 임대인과의 유선통화 또는 상호 간 연장 합의(기재·날인) 등 복시적 간접 확인할 수 있음

첨부 3. 금융거래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	찾아보기...
-----	---------

- * 금융거래인서 등은 공고일 이후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발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금융기관 직인날인이 되어야 함
- * 대출관련(용도) 상 '주택' '임차' '전세' 등이 명시되어 주택 전세 자금 대출목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첨부 4. 주민등록등본 :

[]	찾아보기...
-----	---------

-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상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발급

첨부 5.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	찾아보기...
-----	---------

첨부 6. 신청인 신분증 :

[]	찾아보기...
-----	---------

신청 순위 별 증빙서류

첨부 7. 가족관계증명서 (동본 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 되어 있는 경우)

[]	찾아보기...
-----	---------

- *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로 발급

첨부 8. 혼인관계증명서 :

[]	찾아보기...
-----	---------

첨부 9.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찾아보기...
-----	---------

첨부 10. 장애인증명서 :

[]	찾아보기...
-----	---------

[그림 5] - 신청서류 첨부[임시저장 가능]

(공통) 설문지, 전세확인서류, 대출확인서류, 주민등록표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개별) 가족관계증명서(동본상자녀/배우자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첨부)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가구인 경우 첨부)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구인 경우 첨부)
장애인증명서(장애인 가구인 경우 첨부)

* 필요서류 누락되면 제출불가/ 첨부란당 5mb까지 가능

* 대출확인서류 등 보안이 걸린 파일은 암호 해제 후 업로드 가능

* 파일 하나만 첨부 가능 → 여러장일경우 pdf 나 압축파일 등으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야 가능)

[공통] 필수 첨부서류 ※ 암호 또는 보안 설정된 파일은 해제한 후 등록

첨부 1. 설문지

첨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관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 임대차계약기간은 신청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단, 임대인·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계약 갱신거절 등지를 하지 않고 기존 임대조건으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목시적 갱신으로 보아 인정(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 균가)

* 필요 시 임대인과의 유선통화 또는 상호간 연장 합의(기재·날인) 등 목시적 갱신 요건을 확인할 수 있음

* 공고일 이후 계약기간 시작 임대차 서류(갱신계약서 등) 제출인 경우 이전 계약서류도 추가 첨부 필요(공고일 현재 거주 여부 확인 필요)

첨부 3.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등은 공고일 이후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발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금융기관 직인날인이 되어야 함

* 대출과목(용도) 상 '주택'·'임차'·'전세' 등이 명시되어 주택 전세 자금 대출목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대출 변경 등으로 공고일 이후 대출설명서류 제출인 경우 이전 대출확인 서류도 추가 첨부 필요(공고일 이전 대출 실행 확인 필요)

첨부 4.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에 대한 표기를 전부 공개로 발급

첨부 5.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첨부 6. 신청인 신분증

[그림 6] - [임시저장 또는 보완요청 상태] 첨부한 서류 다운로드 또는 삭제 가능
 * 서류 수정 시 기존 업로드 서류 삭제(빨간색 버튼 클릭) 후 재 첨부 가능

[그림 8] - 신청 완료한 신청서 조회 가능
 - 서류 검토 후 보완요청 시 수정하여 재신청 해야함

신청서 번호	신청자명	신청일자	신청금액	신청상태
21	■■■■■	2024-04-29	1,700,000원	신청료
22	■■■■■	2024-04-29	1,700,000원	보완성 출사표

약관동의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과 배우자는 신혼부부·자녀출산 기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배우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동의함 동의 안함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 유의사항

1가구 당 연 1회 신청(부부간의 주민등록표등본 주소가 다르고 각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더라도 1회만 신청 가능)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이어야 하며, 필요 시 담당자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류는 일괄 반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 안함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하기

취소

임시저장

신청

[그림 7] 개인정보열람, 신청유의사항 등 동의 후 신청하기 클릭
 * 임시저장상태에서는 수정 가능, 신청완료상태에서는 수정 불가